

제 564 호

1976.7.13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편집 : 문화공보실장 조 용 하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 보

차 례

◎ 조 례

제 1054 호 : 서울특별시가스공급조례중개정조례..... 3

제 1056 호 : 서울특별시공업용급수조례중개정조례..... 3

◎ 고 시

제 152 호 : 도시계획시설 (공항) 일부변경지적승인..... 8

제 154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8

제 157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9

제 159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10

제 160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11

제 161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11

제 162 호 : 도시계획시설 (종합외로시설) 결정및지적승인...12

(이면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0741

제 163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일부변경승인..... 13

◎ 공 고

제 150 호 : 환지계획변경인가및 환지에정지일부변경지정공고..... 23

제 152 호 : 서울특별시자동차운전면허시험 (제 1종보통)
일정추가실시공고 14

제 153 호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생산지정업체지정및
대체지정공고 14

제 154 호 : 장안평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공람공고..... 15

◎ 예 규

제 334 호 : 종합상황실운영규정중개정규정 16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시도시가스공급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6. 7. 13

◎ 서울특별시조례제 1054 호

서울특별시가스공급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가스공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 제 3 항중 "설계서와 공사비"를
"공사비"로 하고 동조제 4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시장은 제 1 항에 의하여 승인한
공사불 준공하였을 때에는 제 9 조에
의한 공사비의 정산명세서로 실수요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 20 조 본문을 제 1 항으로하고 동조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조정
량은 다음 경침때에 정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공업용급수조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6. 7. 13

◎ 서울특별시조례제 1056 호

서울특별시공업용급수조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공업용급수조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공업용수급수조례

제 1 조 (목적) 이 목적은 수도법
제 17 조 및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 45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용
수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공급조건등 특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급수의 범위) ①급수구역은
서울특별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이정할 때에는 수도법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도 급수 할 수 있다.

② 급수는 산업시설의 소유자 또는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이 관리하는 특정 지역 내의 산업 시설자에게 특별한 용도에 적합하도록 처리하여 공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이나 급수장치를 공동으로 설치 운영케 할 수 있다.

제 3 조 (공사의 시행)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이를 행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 양수기 이하의 장치에 대한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상수도 시공업자로 하여금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소유자로 검사와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전항의 검사에 대하여는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 1. 자체검사 수수료 사용자제 1개에 대하여 10원

2. 준공검사 수수료 1건에 대하여

10만원 이하 1,500원

50만원 이하 2,000원

50만원 초과 3,000원

제 4 조 (시설분담금) 공업용수의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제 1 호 표에 의한 시설분담금을 전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5 조 (양수기의 고장) ① 공업용수 수요 가동은 양수기의 고장 또는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의한 제량 오차는 익월분 사용료에서 정산한다.

③ 1 항의 점정 수수료 및 수리비용 및 양수기 대금은 수요 가동으로 부터 실비 범위내에서 징수한다.

제 6 조 (급수사용료) ① 공업용수 사용료는 별표 제 2 의 공업용수 사용료 요율표에 의한다.

②공업용수 기본요금은 그 사용량이 신청량의 100분의 50에 미달되는 경우 급수 신청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량을 기본요금으로 산정한다.

제 7 조 < 급수관 손로 > 공업용수 사용자 등에 대하여는 별표 제 3 조의 급수관 (양수기 제외) 손로를 징수한다.

제 8 조 (가압료 징수) ①시장이 특수 가압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공업용수 사용자 등으로 부터 운영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전항의 운영실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 9 조 (타 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급수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 10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정하여진 승인검사 기타의 처분과 신청, 신고 기타의 절차들은 각각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징수한 가입금은 이 조례에 의한 시설 분담금으로 징수한 것으로 본다.

<별표제 1 호> 시 설 분 담 금				
구 분	시 설 분 담 금	신 청 수 량	시 설 분 담 금	
당 초 수 요 처		1 ㎡ 당	13,000 원	
신 규 수 요 처		1 ㎡ 당	17,000 원	
당초수요처 : 공업용 수도공사의 발족당시 투자한 사업체 (공장이전은 포함되지 않음)를 말한다. 신규수요처 : 공업용 수도공사의 발족이후 신규수요처를 말한다.				
<별표제 2 호> 공 업 용 수 사 용 요 율 표				
구 역 별	구 분	1 전 1 개 월 기 본 요 금		기 본 량 초 과 사 용 요 금
		기 본 량	요 금	
시 내	신 청 량	1 ㎡ 당 4 원	신 청 량 초 과 1 ㎡ 당 10 원	
시 외	신 청 량	1 ㎡ 당 5 원	신 청 량 초 과 1 ㎡ 당 15 원	

·별표 제3호·

- 급 수 관 순 로 -

구 경 별	요 금
13 %	1 전 1 개월 150 원
20	300
25	400
40	600
50	1,200
75	2,400
100	2,800
150	4,000
200	5,600
300	8,200
400	11,200
500	15,300

0744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152호

도시계획시설(공항) 일부
변경지적승인

1. 건설부고시제 84호(76.6.11)로
시설 일부변경 결정된 당시 관내
도시계획 시설(공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적 일부 변경 승

인하였기 도시계획법제 13조와 건설
부 고시제 123호(73.4.4)의 권한
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시도시계획과, 판합
출장소 시민봉사실, 경기도 부천시
및 교통부 김포 국제공항 관리사무
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 6. 30

서울특별시장

가. 공항 일부 변경 지적·승인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김포국제공항	영등포구 공항동 일대	7,602,264	경기도도시 계획구역은 별도고시함
		영등포구공항동, 외발산동, 박화 동, 파해동, 오곡동, 오색동일대 경기도 부천시 고갈동 일대	6,428,400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도면생략). 끝

◎서울특별시고시제 154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 고시제 110호(74.8.
9)로 시인 결정 및 지적 승인

된 당시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
을 도시계획법 제 24조 및 건설부
고시 제 6호(74.1.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서대문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 7. 2

서울특별시장

-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산 2 의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산 1 의 1
- 2. 사업의종류및명칭 : 도시계획사업 (학교), 이화여자대학
- 3. 면적및규모 : 8,102㎡ (2,451명) 육교 1식
- 4. 시행자주소및성명 : 서대문구 대현동 11-1 학교법인 이화학당 이사장 서은숙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연월일 : 허가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나. 준공예정일 : 77.5.1

- 6. 위치 및 계획평면도 : 별첨 (도면생략)
- 7. 공사 설계 도면 : 별첨 (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과 서대문구청에 보관함.

◎서울특별시고시제 157 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

- 1. 서울특별시고시 제 149 호 (76.6.29) 로 추가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된 당시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은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6 호 (74.1.5) 의 규정개 의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관악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 7. 6.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용현동산 8 의 15 의 32명

2. 사업의종류 : 학교시설사업
 명 칭 : 서울대학교종합시설사업

3. 사업시행자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탄동산 56 의 1
 성 명 : 서울대학교 총장 윤채주

4. 사업의착수 : 준공 예정 년 월 일
 가. 착수년월일 : 76.7
 나. 준공예정년월일 : 79.12.31

5. 위치도및평면계획도 : 별첨 (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과 관악구청에
 보관함.

◎서울특별시고시제 159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 56 호 (76.3.22)
 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
 업(도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와 동법 제 26 조 및 건설

부 고시 제 123 호 (73.4.4)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 료국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
 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976. 7. 9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의 위치 : 마포구 당인리
 칠교-한강

2. 사업의종류및명칭 : 봉원전계수공사

3. 사업 규 모 : D = 20 m
 L = 200 m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5. 착수및준공예정일 : 76.7.10 -
 77.11.30

6. 사용 또는 주용할 재산의 소
 재지 : 별 첨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
 지 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설명 : 별첨토지
조서

◎ 서울특별시고시제 160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1. 건설부고시제 198 호(71.4.7)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도
도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
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와 동법 제 26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123 호(73.4.4)의 규정
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 7. 9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의위치 : 서울특별시 성동
구 용답동 일부

2. 사업의종류및명칭 : 방사 4 호선(마

장동-신당로)도로공사

3. 사업규모 : B = 50 m
L = 660 m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5. 착수및준공예정일 : 76.7.10-
77.6.30

6.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재
지 : 별첨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설명 : 별첨토지조서

◎ 서울특별시고시제 161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1. 건설부고시제 223 호(75.12.31)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도
도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
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와 동법 제 26 조 및 건설
부 고시 제 123 호(73.4.4)의 규
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76. 7. 9</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장</p> <p>1. 사업시행의위치 : 성동구 광장동 구의동 일부</p> <p>2. 사업의종류및명칭 : 어린이대공원 - 천호대교차(일체 교차로) 도로신설</p> <p>3. 사업 규모 : 가. B = 8 m 나. L = 800 m</p> <p>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p> <p>5. 착수및준공예정일 : 76.4.30 - 77.12.30</p> <p>6.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재지 : 별첨</p> <p>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p>	<p>수용법제 4조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성명 : 별첨토지조서</p> <p>◎ 서울특별시고시제 162 호</p> <p style="text-align: center;">도시계획시설(종합의로시설)결정 및 지적승인</p> <p>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종합의로시설)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 하던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동법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123 호 (73.4.4)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경비국 도시계획과와 강남구청 시민봉사실이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76. 7.13</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p> <p style="text-align: center;">가. 도시계획시설(종합의로시설)결정 및 지적승인</p>		
<p>시 설 명</p>	<p>위 치</p>	<p>면 적</p>	<p>비 고</p>
<p>종합의로시설</p>	<p>강남구 내곡동 산 12-425의 9 필</p>	<p>31,714㎡ (9,593평)</p>	
<p>※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도시경비국 도시계획과와 강남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함.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p>			

서울특별시 고시 제 163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적 일부변경승인

1. 당시판내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다음과 같이 지적 일부 변경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의 규정과 전설부고시 제 123 호 (73.4.4) 의 권한위임 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익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의 관할구청 시민봉사실게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 이게 한다.

1976.7.13

서울특별시 장

가. 지적 일부 변경조서

구분	등급	유번	번호	폭 원	연 장	기 점	공 점	비 고
기정	대 로	3	112	25 m	350 m	시청앞광장	한국은행앞	소공동 86-1 및 6
변경	"	"	"	"	"	"	"	외 기차 확장

별첨도면 표시와 같음(도면생략) 붙.

공 고

◎ 서울특별시 공고 제 150 호

환지계획변경인가및환지
예정지일부변경지정공고

1. 천호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의 626 구획내 천호동 116외 2호외 6 필지에 대하여 변경 사유가 있어 서울특별시 공고 제 22 호 (76.2.4) 로 환지 계획변경 공람 공고한 바 있으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47 조 및 제 55 조와 행정권한 위 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 제 11 항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 지 계획을 변경 인가 하고 동법 제 56 조 규정에 의하여 환지 예정 지를 변경 지정하였기 공고 합니다.

2. 환지 예정지 변경도시는 도시정비 국 구획정리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 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 공람에 공합니다.

<p>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서면 송달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p> <p>1976.7.7.</p> <p>서울특별시장</p>		<p>㉞ 서울특별시공고 제 152 호</p> <p>서울특별시자동차운전면허시험 (제1종보통) 밀정추가실시공고</p>		
<p>1. 실시구분</p>				
운전면허		응시원서접수기간	필기시험일정	시험장소
종별	구분			
1종	보통	76.7.22-7.31	76.8.2	서울특별시 자동차운전 면허시험장
<p>2. 참고</p> <p>기타시험세부 실시사항은 서울특별시공고 제 297 호 1976년도 서울특별시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실시 공고에 의하여 종전대로 실시함.</p>		<p>㉞ 서울특별시공고 제 153 호</p> <p>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품 생산 지정업체 지정 및 대체지정공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수출품생산 지정업체 지정요령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품 생산 지정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 및 대체지정하였기 이를 공고한다.</p> <p>1976.7</p> <p>서울특별시장</p>		
<p>3. 응시문의 안내</p> <p>경찰국 교통과 (44-6592 , 44-7719 24-3337 , 24-3338)</p> <p>1976.7.10</p> <p>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p>				

1. 지정업체						
지정번호	기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품명	74년수출 목표액	비고
469	삼양전자 기기 (주)	백승걸	성동 성수동 2가 272-29	저합기	\$ 500,000	
2. 대체지정업체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지정번호	501		과동			
업체명	성광조명공업(주)		.			
대표자	김선경		이종구, 이순			
소재지	성북 정능동 646-3		과동			
수출품명	현광램프		.			
◎ 서울특별시공고 제 154 호 장안평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인가공람공고			공합니다. 1976.7.13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장안평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인가를 건설부 공고 제 77 호 (76.6.25)로 건설부 장관의 시행 인가를 득하였기에 토지구획정리 사업 법에서 규정한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공고하오며, 관계도서는 도시 정비국 기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공람에			1.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구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면목동, 강 안동, 성동구, 군자동 일부 1,858,300㎡(562,133경) 2. 사업시행기간: 1976.6.25 - 1980.12.31 3. 유의사항			

예 규

가. 서울도시계획 장안명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내 토지는 사업실시 기간중(공사)에 사업집행상 도시계획법 제 29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시가 사용케 되오니, 환지에 정지 지정 및 정지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금지 할 것이며, 상기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구획정리사업법 제 39 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을 것.

나. 사업지구내 토지 소유자의 권리 변동이 있을 때는 즉시 신, 구 토지 소유자 연서로 신고 할 것.

4. 본 공고에 대한 서류 송달은 별도 토지 소유자에게 발송할 것이나 미수령되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가름합니다.

◎ 서울특별시예규 제 334 호

종합상황실 운영규정중개정규정

종합상황실 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7 조제 1 호중 다. . . 바. . . 사. . . 마. . . 라. . . 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근무는 A, B, C 조 3 조로

편성하여 교대 근무토록 한다.

바. 상황실장은 근무 교대시 작전 과장에게 교대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 근무자는 무단이 좌석을 이탈하지 못한다.

아. 상황실 근무요원의 복무 및 교제는 경찰경비부서 인사관리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타. 상황실장은 중요사건 발생시 상황을 접수 기록하고 필요한 초동 조치를 취한후 보고 통보하며, 상황보고를 받은 주무과장 또는 당직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본직 및 주무과 관계직원을 상황실에 정위치케 하여 상황처리에 임하게 하

여야 한다.

제 8조중 제 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 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무선통신에 의하여 처리되는 치안 상황(교통정보센터, 지령실 및 112 신고센터)도 일차적으로 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상황실장은 수리된 내용을 검토, 지령수단을 구분(유선은 상황실, 무선은 지령실)하여 지령체하고 계속상황을 파악 처리한 후 주무과에 이송하여야 한다.

10. 지령실 근무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종합상황실 업무를 체계적 및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가. 살인, 강도, 살인강도사건등 사회의 이목을 끄는 중요사건은 상황실장에게 우선 보고하고 이에 대한 지시를 받아 처리하되 기동순찰차의 급배는 해당지역 순찰 근무중인 특별순찰대 차량에 의한

다.

나. 폭행사건등 일반적인 경미한 사항은 우선 지령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무선지령으로 할 수 있다.

다. 1. 2장. 1. 2목등 중요사건에 대한 무선통신 음어는 1개월마다 교환하여야 한다.

다만, 음어누설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교환토록 하여야 한다.

제 11조 제 1호중 "경비과장이 부책한다"를 "작전과장이 진다"로 한다.

제 12조 제 2호"가" 및 "다"목중 "경비과장"을 "작전과장"으로 한다.

제 14조 제 1호중 "경비과장"을 "작전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 2호 및 제 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상황실을 통제구역으로 하고 상황실근무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한다.

3. 상황실근무자 및 필요에 의하여 상황실에 출입이 허용된자는 별지 제 9호서식에 의한 출입증을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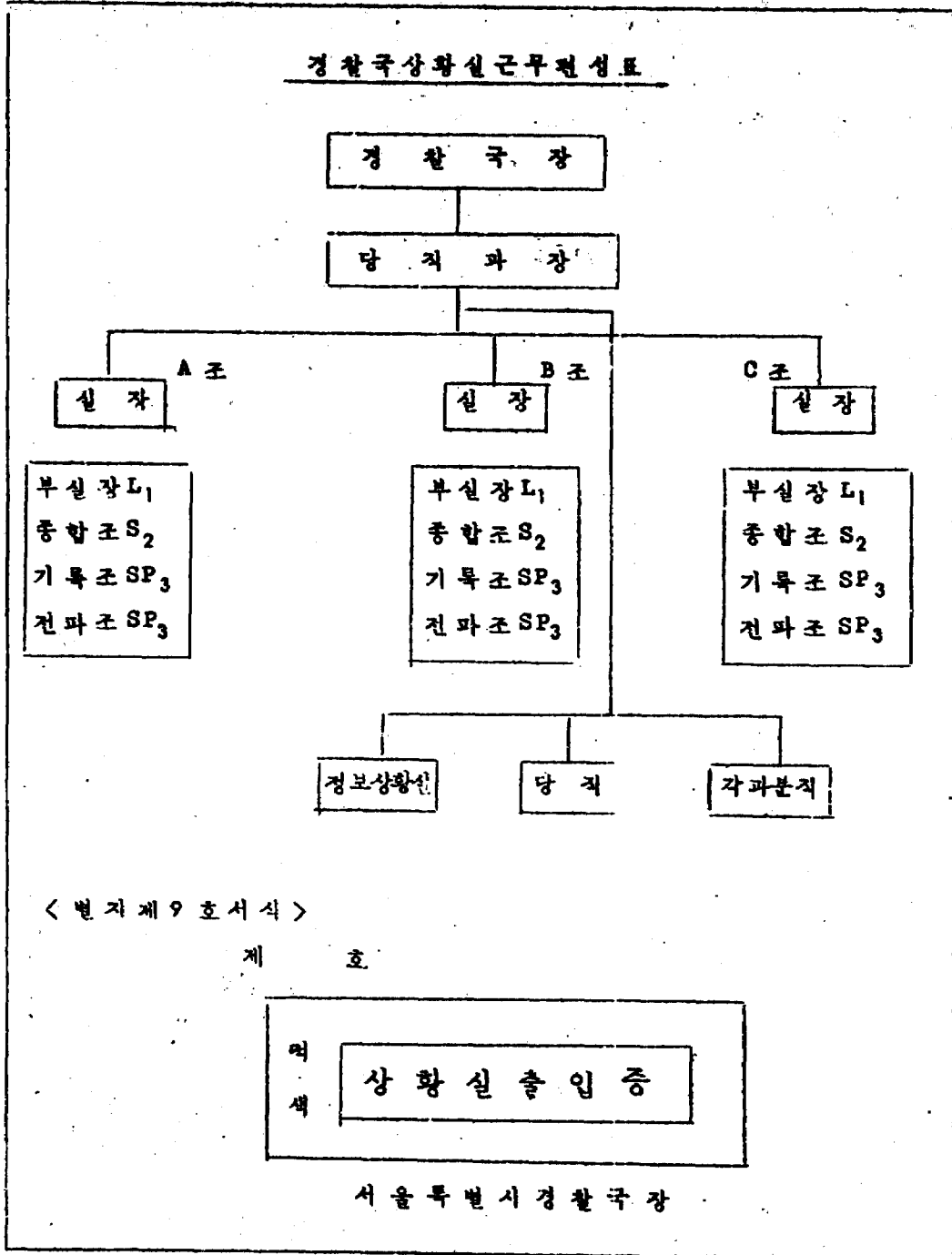
제 15조 제 2호 "다"목중 "경비과장"을 "작전과장"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지 제 9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76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경찰국상황실근무원성표



< 별지 제 9 호 서식 >

계 호

력
 색

상 황 실 출 입 증

서울특별시경찰국장